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1. 관련 :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 조, 제 75 조 및 제 89 조의 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필요

(변경)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매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므로 아래 주소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